

## 1. 개정이유

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,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,
-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제한물질 고유번호 06-5-7(백석면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)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-4-27(청석면 등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)에 백석면을 추가□조정
- 제한물질 고유번호 06-5-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,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
- 염화메틸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□건축용□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(고유번호 06-5-15) 지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환경부고시 제2024-00호

환경부고시 「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제2024-248호, 2022.12.20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00일

환 경 부 장 관

###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□일부개정고시안

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□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고유번호 06-5-7 및 06-5-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하고, 06-5-15를 신설한다.

06-5-7	<삭 제>	<삭 제>
06-5-8	1. 납[Lead; 7439-92-1] 및 이를 0.009% 초과 함유한 혼합물	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	2. 납 [Lead; 7439-92-1]과 그 화합물[Lead compounds] 및 이를 0.009% 초과 함유한 혼합물	페인트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「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·부분품의 제작, 유지·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

		<p>운반하는 경우</p> <p>나. 「군수품관리법」 제2조 및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(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) 및 그 부품·부분품의 제작, 유지·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하는 경우</p>
06-5-15	<p><u>염화 메틸렌[Methylene chloride; 75-09-2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u></p>	<p>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한다.</u></p> <p><u>가.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</u></p> <p><u>나. 가정용, 건축용, 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</u></p>

별표 3의 고유번호 06-5-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<p><u>2. 납 [Lead; 7439-92-1]과 그 화합물[Lead compounds] 및 이를 0.009% 초과 함유한 혼합물</u></p>		***
06-5-8	1	<u>Lead</u>	7439-92-1
	2	<u>C.I. Pigment red 104;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</u>	12656-85-8
	3	<u>C.I. Pigment yellow 34; Lead sulfochromate yellow</u>	1344-37-2
	4	<u>Dioxobis(stearato)trilead; Bis(octadecanoato)dioxotrilead</u>	12578-12-0
	5	<u>Fatty acids, C16-18, lead salts</u>	91031-62-8
	6	<u>Lead 2,4,6-trinitroresorcinoxide</u>	15245-44-0
	7	<u>Lead 2-ethylhexanoate</u>	301-08-6
	8	<u>Lead acetate</u>	301-04-2
	9	<u>Lead acetate</u>	1335-32-6
	10	<u>Lead azide</u>	13424-46-9
	11	<u>Lead bis(tetrafluoroborate)</u>	13814-96-5
	12	<u>Lead chromate (PbCrO4)</u>	7758-97-6

13	<u>Lead dinitrate</u>	<u>10099-74-8</u>
14	<u>Lead monoxide</u>	<u>1317-36-8</u>
15	<u>Lead oxide (Orange lead)</u>	<u>1314-41-6</u>
16	<u>Lead oxide phosphonate</u>	<u>12141-20-7</u>
17	<u>Lead oxide sulfate</u>	<u>12202-17-4</u>
18	<u>Lead stearate</u>	<u>1072-35-1</u>
19	<u>Lead sulfate, tetrabasic</u>	<u>52732-72-6</u>
20	<u>Pentalead tetraoxide sulfate</u>	<u>12065-90-6</u>
21	기타 납화합물	-
22	1~21까지의 화학물질을 0.009% 초과 함유한 혼합물	-

별표 4의 제목 중 “(제5조제1항 관련)”을 “(제4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하고, 고유번호 06-4-27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06-4-27	청석면[Crocidolite; 12001-28-4], 갈석면[Amosite; 12172-73-5], 안소필라이트석면[Anthophyllite asbestos; 77536-67-5], 악티놀라이트석면[Actinolite asbestos; 77536-66-4], 트레몰라이트석면[Tremolite asbestos; 77536-68-6], 백석면[Chrysotile; 12001-29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	동 물질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고유번호 06-5-8과 06-5-1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